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60	윤준병의원	2025.03.2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9.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37	김성원의원	2025.06.2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직 접 회부(2025.9.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89	오세희의원	2025.08.2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직 접 회부(2025.9.9.)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 9. 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그리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해서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최근 온라인쇼핑몰의 확산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법률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2025년 11월 23일까지”를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 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 의3은 <u>2025년 11월 23일까지</u> 그 효력을 가진다. <단서 신 설>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 ----- ----- ----- ---- <u>2029년 11월 23일(이하 이</u> <u>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u> <u>까지</u> ----- ----- <u>. 다만, 정부는 효력상</u> <u>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u> <u>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u> <u>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u> <u>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u> <u>야 한다.</u>